

TBT 월간동향



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이란?

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,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

* 예를 들어,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다수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, 수출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중복 및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, 이는 원활한 무역의 기술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

▶ 무역기술장벽(TBT)의 예

- 기술규정 : 에너지라벨링, 에너지효율제도, 안전기준, 화학물질 등록제도 등
- 적합성평가제도 : 인증, 시험, 검사 등

무역기술장벽의 유형

▶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

사례

미국의 LED 램프 에너지효율 시험기준('12.4월 통보) 중 광학특성 측정 및 수명 평가에 대한 기준이 국제표준과 불일치하여 미국 수출제품에 대한 별도시험과 제품 개발 필요

▶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

사례

중국의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('15. 5월 공포) 중 3등급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중국산의 2배 수준으로 중국산과 수입제품에 대한 차별이 존재 하여 수출준비 비용부담

▶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

사례

브라질은 냉장, 냉동기기에 대한 안전, 에너지효율, 수질 등에 대한 규제('13. 6월 통보)를 도입하였으나, 규제대상에 포함된 냉장고는 전기안전규제가 이미 시행 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됨

▶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

사례

인도는 타이어 안전규제('09. 11월 통보) 시 자국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BIS 인증마크가 각인된 타이어에 대해서도 마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용되는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음

무역기술장벽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이란?

▶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

사례

중국은 '12.8월(한국은 '14. 4월)부터 중국강제인증(CCC)을 받는 가전제품의 비금속 재질 시험요건을 강화하였으나, 개정사항을 WTO에 통보하지 않아 규제를 늦게 알게 되었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었음

▶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유예기간 부재

사례

싱가포르의 '14. 2월 가전제품의 에너지라벨 제도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고, 텔레비전은 '14. 4월부터 즉시 규제시행에 들어가 규제대응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음

▶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

사례

인도의 2차전지 안전규제('14. 10월 공포) 표준은 국제표준(IEC62133)과 부합화 되어 있으나 전세계 IECCE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CB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아 적합성 평가 중 동일한 기준규격에 대한 중복 시험 발생

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

- WTO 협정 발효 | 1995년 1월 1일 (123 개국)
- WTO 주요분야 | 총괄협정(WTO 설립협정), 무역협정(상품, 서비스, 지식재산권), 분쟁해결, 무역정책검토
- WTO TBT 위원회 |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산하 상품무역이사회 내의 위원회
-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 | 3회/년(3월, 6월, 11월)
 - 대 표 : 회원국의 인정된 대표자가 참석, 자문가 동반가능
 - 의 장 : 매년 첫번째 회의에서 선출(다음해의 첫번째 회의까지 임기)
 - 의사결정 : 합의결과를 상품무역위원회에 상정
 - 언 어 : 영어, 불어, 스페인어
 - 회의공개 : 일반적으로 비공개
- WTO TBT 활동
 - 특정무역현안(Specific Trade Concern) 논의
 - 협정 이행 및 행정에 대한 연례 검토
 - 3년 주기 검토 : 필요시 협정의 권리와 의무사항 조정을 권고
 - 기술협력 : 경험교환 및 능력배양

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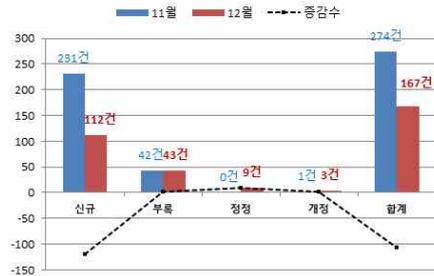
I. 월간 TBT 통계	p. 5
II. TBT 대응 사례	p. 7
III. 월간 TBT 이슈	p. 9

I. 월간 TBT 통계

▶ 통보문 현황

< 2017년 12월 통보문 현황 개요 >
총 43개국 274건 통보(전월 대비 88건 증가)

종류	11월	12월	증감 수
신규	231	112	-119
부록	42	43	1
정정	0	9	9
개정	1	3	2
합계	274	167	-107



< 분야별 현황 >

종류	통보 수
의약품	58
전기전자	30
화학세라믹	23
생활용품	12
에너지	9
교통/안전	8
소재나노	8
건설	7
정보디지털	6
농수산물	4
바이오환경	2
기계	0
기타	0
합계	167



< 세부분야 TOP 10개 >



I. 월간 TBT 통계

< 국가별 현황 >

국가	건수	국가	건수	국가	건수
남아공	2	에콰도르	5		
대만	8	엘살바도르	1		
도미니카공화국	1	예멘	3		
멕시코	5	오만	3		
미국	15	우간다	10		
바레인	3	유럽연합	2		
베트남	3	이스라엘	29		
볼리비아	1	인도	7		
부룬디	2	일본	2		
브라질	10	중국	1		
사우디아라비아	6	칠레	11		
스위스	1	카타르	3		
싱가폴	1	캐나다	5		
아랍에미리트	3	코스타리카	1		
아르헨티나	1	쿠웨이트	3	합계	1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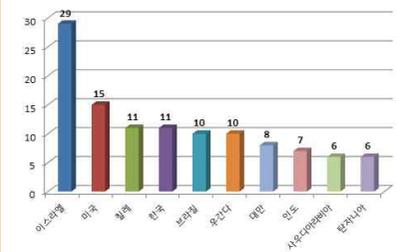
지역	건수	비율
아시아	88	53%
중남미	31	19%
북미	25	15%
아프리카	20	12%
유럽	3	2%
합계	167	100%

< 지역별 현황 >



국가	건수
이스라엘	29
미국	15
칠레	11
한국	11
브라질	10
우간다	10
대만	8
인도	7
사우디아라비아	6
탄자니아	6
합계	113

< 발행건수 TOP 10개국 >



II. TBT 대응 사례

| 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 사례 |



대만, TV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 규제

- ▶ **규 제 명** : TV의 최소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사항 및 검사방법 (미통보)
- ▶ **관련부처** : 경제부 에너지국(MOEA)
- ▶ **목 적** : 소비자 건강 및 안전, 환경보호, 사기행위 및 소비자 보호
- ▶ **대상제품** : TV
- ▶ **HS 코드** :
- ▶ **규제내용**
'09.7월 시행된 대만 에너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소비장치는 당국이 규정한 허용기준을 만족하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.

동 규제에 따라 기존 '10.7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4개 품목(에어컨, 냉장고, 자동차, 오토바이)에서 '18.1월부터 제습기, 온수기, 가스보일러 등 5개 품목이 추가된 총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. 우리기업은 최소에너지소비허용값(MEPS)과 모든 등급의 에너지소비허용기준이 유럽, 한국 등의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대비 강화되어 수출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, 또한 OLED(organic light emitting diodes) TV는 타 기기보다 효율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규정 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.

이에 따라 TBT 중앙사무국은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규제에 대하여 대만 당국에 공식 서한을 2017년 9월 송부하였으며, 2017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중 양자회의를 진행하였다.

양자회의에서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에너지소비 허용기준 완화 및 OLED TV 규제대상 제외 및 시행일 연기를 요청하였다. 대만정부는 OLED TV의 규제대상 적용제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다. 이로써 우리 측 수출기업의 궁급증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동 규제 이행에 있어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.

II. TBT 대응 사례

| 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 사례 |



아르헨티나, TV 라벨링 규제

- ▶ **규 제 명** : TV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 (미통보)
- ▶ **관련부처** : 표준인증원(IRAM)
- ▶ **목 적** : 소비자 보호
- ▶ **대상제품** : TV(가정용 및 기타 유사 용도, on-mode)
- ▶ **HS 코드** :
- ▶ **규제내용**
'17.12월 시행되는 IRAM 62411 및 IRAM 62301 개정 규제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TV는 동작모드 및 대기모드 에너지효율 라벨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기준(소비전력 에너지효율 7%, 대각선 길이 2%)을 준수해야 한다. 또한 에너지효율 등급, 소비전력 및 대각선 길이가 포함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.

접수된 내용을 분석 결과, 동 규제는 소비전력 및 화면 대각선 길이에 대한 라벨 표기 기준이 모호하며, 대각선 길이가 사후관리에 포함되어 우리기업의 혼돈이 예상되었다. 이 뿐만 아니라, 에너지효율에 대한 라벨 표기값을 테스트한 제품 샘플값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, 라벨에 테스트 값을 명기하도록 한 것은 샘플링 시료 및 측정장비의 공차(tolerance)를 고려하지 않아 향후 사후관리 시 등급 기준 불만족 제품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기업 수출준비에 애로가 예상되었다.

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(2017년 11월) 및 WTO TBT 위원회 기간에 진행된 양자 회의(2017년 11월)에서 제조자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선언값을 라벨의 소비전력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으며, 또한 대각선 길이를 사후관리 대상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.

그 결과, 아르헨티나는 라벨 표기 기준을 완화하여 제조자 선언값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고 우리기업이 해당 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수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
III. 월간 TBT 이슈

□ 이집트 에너지 및 안전 규제

□ 규제 개요

이집트 에너지 및 안전규제

- ▶ 규 제 명 : 이집트 에너지 및 안전규제
- ▶ 관련규정 : Decision No.1002/2017
- ▶ 관련부처 : 산업통상부(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)
- ▶ 목 적 : 소비자 건강 및 안전
- ▶ 대상제품 : 청소기, 전기오븐, 가스를 사용하는 조리기기 등
- ▶ 규제내용 : 결의안 No.1002/2017에 포함된 이집트 표준을 '18.2.2일(안전)과 '18.8.2일(에너지)부터 강제화
- ▶ TBT통보 : 미통보
- ▶ 시행시기 : 2018.2.2.(안전), 2018.8.2.(에너지)
- ▶ 수출현황 : 55.6만불('16년)

□ 규제 주요 내용

- 이집트 산업통상부는 결의안 No.1002/2017에 포함된 이집트 표준을 '18.2.2일(안전)과 '18.8.2일(에너지)부터 강제화
- * 결의안 No.1002/2017에 포함된 이집트 표준

구분	표준번호	표준명	대상제품
에너지 (시행일: '18.8.2)	8057	가정용 전기기기 에너지효율-청소기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계산방법	청소기
	8058	가정용 전기기기 에너지효율-전기 오븐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계산방법	전기 오븐
안전 (시행일: '18.2.2)	164-1-3	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의 안전요건-글라스 세라믹 핫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기기	세라믹 핫플레이트
	164-1-1	LPG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의 안전요건-일반요건	LPG 조리기기
	164-1-2	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의 안전요건-컨벤션 오븐 또는 그릴	컨벤션 오븐, 그릴
	164-2-2	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의 안전요건-에너지의 합리적 사용	가스 조리기기

□ 기업 애로사항

- (시행일 기준) 세부 인증 절차와 시행기준(통관/시장판매) 정보 부족

□ 대응 방향

- (세부 인증 절차) 제품별 세부 인증 절차 정보 제공 요청

구분	문의사항
시험성적서 인정	제3자 시험성적서, 제조자 성적서 중 어느 것이 인정되는지?
시험소	제3자 시험소, 현지 시험소, 제조자 시험소 중 어디서 시험해야 하는지?
인증 신청 방법	EOS(이집트표준)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지 문의

- (시행 기준) 시행일부터 동 규제 기준이 통관 판매 제품인지 시장 판매 제품인지 문의

□ 향후 계획

- 에콰도르 질의처에 아국 질의사항 전달('17.10.)

수출기업 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기관

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TBT 컨소시엄 기관별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정책과

- 담당분야 : TBT대응 총괄
- 전화 : 043- 870-5525~26 / Email : tbt@korea.kr

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(KEA)

- 담당분야 : 전기전자, 정보디지털, 에너지, 식·의약품(의료기기), 기타
- 전화 : 02-6388-6184 / Email : knowtbt@gokea.org

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(KSCIA)

- 담당분야 : 화학세라믹, 바이오환경, 생활용품, 식·의약품(화장품, 의약품)
- 전화 : 02-2088-7254 / Email : yjsung@kscia.or.kr

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(KOCEMA)

- 담당분야 : 기계, 건설, 소재나노, 교통안전
- 전화 : 070-8661-0804 / Email : terra67@kocema.org
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

- 담당분야 : 기술규제 분석,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
- 전화 : 02-2164-0032 / Email : khjung21@ktr.or.kr
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KCL)

- 담당분야 : 기술규제 분석,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
- 전화 : 02-3415-8754 / Email : sophiari@kcl.re.kr

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(KTC)

- 담당분야 : 기술규제 분석, 산업계 TBT 애로 대응 지원
- 전화 : 031-470-1631 / Email : symoon@ktc.re.kr